

- (심사대상)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,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
 1.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
 2. 부동산 임대업
 3.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
 4. 직무 관련 지식·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(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)
 5.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
 6.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(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)
- (운영기준)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- (3) (겸직허가 여부 결정)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,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·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
-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, 허가기간은 **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** 하되, 시간강사·자문 위원 등과 같이 임명·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
※ 단,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,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는 최대 1년
- (4) (결과통보)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
- (5) (겸직허가 취소)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
-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
 -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
 -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4)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

가) 기본방침

- (1)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 외 계속성이 있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직을 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.
※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‘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’ 참조
- (2)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, 겸직 활동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나)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

- (1)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.

-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.(국가공무원법 제60조)
-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,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(국가공무원법 제63조)
-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·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.(국가공무원법 제65조)